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3. 11(목)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2. 18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2. 19

라. 상정일자 : 2010. 3. 5(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정병일 기획관리실장
- 검토보고 :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중진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2007. 11. 1일 재의결된 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·판결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행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삭제(안 제11조)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(안 제12조)
- 부칙<2007-11-12 조례 제4101-1호>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2007. 11. 1일 재의결된 『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이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판결(2007추141호, 2009. 12. 24)됨에 따라 안 제11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김소림, 지정구 위원
 - 우리시에서 재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법원 무효 확정판결에 따른 조례 개정과 별개로 향후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시행시 의회의 사전 보고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할 것.

< 답 변 >

- 기획관리실장 정병일
 -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상철, 김소림, 배영민, 지정구, 최만용 위원.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5명)

7. 기 타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39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39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인천광역시조례 제4101-1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 제1조부터 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의무 부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면적 150,000㎡ 이상 또는 총 개발사업비 3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의 협약, 대행, 위탁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용지매각으로써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100억원 이상의 용지매각,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</p>	<p><삭 제></p>
<p>제12조(감사 및 조사) ① <u>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(이하 이장에서 “감사”라 한다)를 실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행정사무조사(이하 이장에서 “조사”라 한다)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2조(감사 및 조사) ① <u>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영 제39조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부칙<2007-11-12 조례 제4101-1호>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감정가격 이하의 토지매각 등의 등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사업은 매매된 가격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에 대한 잉여금환수·활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협약 등이 체결되어 매각이 진행중인 토지공급을 위한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개발사업시행 등의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개발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단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